
2025년 인권경영 추진 결과 보고

2026. 2.

I 인권경영 개요

□ 인권경영 추진체계

비 전	「존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인권 중심 국악방송		
중장기 목 표	2024년 인권경영 기반 재정립	2025 ~ 2026년 인권경영 관리체계 확대	2027 ~ 2028년 인권경영 확산
추진 전략	1. 인권경영 관리체계 개선	2.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	3. 인권존중 확산활동 강화
추진 과 제	① 의결기구 재구성 및 환류 강화 ② 인권경영 정비 및 개선	① 구제절차 정비 ② 구제절차 매뉴얼 작성	① 인권교육 실시 ② 인권경영 실태조사 ③ 인권영향평가 ④ 인권경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성과 지 표	정부 경영평가		자체 인권경영 평가

실 행 체 계	규 정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의결기구	주관부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경영기획부
	위 원 장 : 사장 내부위원(2인), 외부위원(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 운영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협 업	
	심의감사부 성희룡·성폭력 고충 상담원	

□ 인권정책선언(인권경영헌장)

- 인권존중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인권경영 실천의지 확립을 위해 국내외 인권이슈 등을 반영한 인권경영헌장 개정('24.9월) 및 공포('24.10월)

국악방송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전통문화예술 대중화 전문 방송기관으로서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신분, 출생지, 인종, 정치적 견해, 성적 정체성,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위해 임직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활동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등 정보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시청취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아동·청소년 방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 악 방 송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상담·신고창구

경영기획부	심의감사부	고충상담원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성희롱·성폭력 등

- (경영기획부) 내부임직원 또는 외부이해관계자 등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인권(평등권·신체의자유·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심의감사부) 기관 내에서 임직원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윤리)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고충상담원) 기관 내에서 임직원이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인권침해 구제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상담	보고	약식조사
피해자 또는 제3자	접수대장 등재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사실관계 파악 및 조정 중재
위원회 소집	조사	결정 및 통보	시정 및 조치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소집 및 상정	서면, 출석 요구 등 조사 수행	심의의결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심의결과 이행

- (신 고)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직원은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를 통해 신고

-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이용한 대면·비대면·익명 신고 모두 가능
- 신고 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

- (신고접수) 경영기획부 인권침해담당자가 접수 및 접수대장 등재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등 다른 처리절차를 두고 있는 사안의 경우 다른 고충으로 접수 변경
- (상 담) 인권침해 담당자 또는 사내 고충상담원을 통한 상담
 - 사건의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등 피해자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방법 모색
 - 인권침해 행위일 경우 : 접수 및 윤리·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인권침해 행위가 아닐 경우 : 민원 접수, 관련 내규에 의해 처리
- (인권침해 피해 보고) : 윤리·인권경영위원장(기관장)
- (약식조사) 사건해결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비밀유지·신속성·공정성·객관성이 중요
 - 조정 및 중재 :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및 중재절차 진행하며, 조정 및 중재가 성립할 경우 모니터링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위원회 소집 및 상정) 인권침해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수집 및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음
 - 윤리·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을 연장 가능)
- (결정 및 통보)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의결 후, 반드시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함
- (시정 및 조치)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하여야 함

II

과제별 추진 결과(종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1. 인권경영 관리체계 개선	① 의결기구 재구성 및 환류 강화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25.6월)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개정(안)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대한 심의·의결('25.11월) ■ '25년 인권영향평가 심의·의결('25.12월)
	② 인권경영 정비 및 개선	협력사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이행 약속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정('25.9월)
2.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	③ 구제절차 정비	구제절차 관련 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작성 및 개정 추진 계획 수립('25.10월)
		내부 의견수렴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를 통한 내부 의견조회('25.10월) 및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심의('25.11월)
		구제절차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개정('25.11월)
	④ 구제절차 매뉴얼 작성	구제절차 매뉴얼 수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절차 매뉴얼 수립 계획('25.10월)
내부 의견수렴 및 심의를 통한 매뉴얼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를 통한 내부 의견조회('25.10월) 및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심의('25.11월) 	
		매뉴얼 확정 및 그룹웨어 게시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게시판 게시('25.11월)
3. 인권존중 확산활동 강화	⑤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계획(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인권교육 실시 계획(안)('25.7월)
		인권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인원 73명 중 "73명 전원 수료"
	⑥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경영 실태조사 계획(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인권경영 실태조사 계획(안)('25.10월)
		인권경영 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76명 중 57명 참여(75.0%) ■ 종합점수 "59.45점"('24년 대비 △2.53점)
	⑦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체크리스트 평가 ■ (2차 평가) 외부위원(전문가) 서면 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부문 : 매우우수(97점, 가등급) - 「주요사업」부문 : 매우우수(92점, 가등급)
	⑧ 인권경영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인권경영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2월 게시 예정